24. 12. 16. 오후 2:30 인쇄

제도소개 - 한글

제도소개	병역의무이행	담당안내

한글안내

English

제도소개

개요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제도 연혁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체류자격, 출입국, 학업, 영리활동 등 체류실태를 종합 검토, 국외이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처: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유로 신청 시)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 시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24. 12. 16. 오후 2:30 인쇄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 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신청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거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는 연기 됩니다.

유의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적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